

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: 2014. 04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 : 입학관리팀(950-5403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조직)	제4조(기능)
제5조(임기)	제6조(개최 및 의결)	제7조(관계자 회의 참석)	제8조(비밀보장)
제9조(행정사항)	제10조(세칙)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입학전형 시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·감독하고자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제2조(명칭) 이 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(개정15.02.06)

제3조(조직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춘다.

-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입시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있어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(개정15.02.06)
- 2. 부정방지 대책에 따른 입학전형 관리(개정15.02.06)
- 3. 대학입학 전형의 자체감사(개정15.02.06)
- 4. 기타 입학시험 및 공정성과 관련된 제반사항(개정15.02.06)

제5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입학시험전형 일정에 따라 1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개최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

만, 가·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관계자 회의 참석) 위원회는 필요시 본 대학 교원이나 직원, 입학전형에 관계되는 외부인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보장)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한다.

제9조(행정사항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 및 관계서류는 위원회의 임기 종료 시 입학관리팀으로 이관하여 보관한다.

제10조(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